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6

발의연월일 : 2020. 6. 26.

발 의 자:이종성·박성중·김형동

임이자 · 정점식 · 이 영

김석기 · 이태규 · 김승수

신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장례식장영업자의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어 장례식장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기 쉽고,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계약으로 인해 장례 후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설명의무가 있으나 짧은 장례 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기에,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장례식장이용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제3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교육"을 "교육,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으로,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2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장례의식의 내용
-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제5항제1호"를 "제29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7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2의2.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단서 중 "제29조제5항제2호"를 "제29조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제5항제2호"를 "제29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7까지를 각각 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3(종전의 제12호의2) 중 "제29조제5항제1호"를 "제29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4(종전의 제12호의3) 중 "제29조제5항제2호"를 "제29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5(종전의 제12호의4)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6(종전의 제12호의5) 중 "제2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6(종전의 제12호의5) 중 "제29조제7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7(종전의 제12호의6)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12의2.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① (생 략)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	②
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	
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	
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	
요 금지, <u>교육</u> , 거래명세서의	<u>교육, 계약체결 전 정</u>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u>보제공</u>
부터 <u>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u>	<u>체</u> 6
<u>항</u> 을 준용한다.	<u>항까지, 제8항 및 제9항</u>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u>말한다)</u>
	<u>2. 장례의식의 내용</u>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

시설

⑤ ~ ⑧ (생 략)

- ⑨ 제4항 및 <u>제8항</u>에 따라 게 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 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 준 등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 한다.
-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저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 2. (생 략) <u><신 설></u>

<u> </u>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
<u>7]</u>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
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underline{6}$ \sim $\underline{9}$ (현행 제5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u>⑩</u>
세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u>.</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하
지 아니한 경우

- 3. <u>제29조제5항제1호</u>를 위반하 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항 제 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 4. <u>제29조제7항</u>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5. <u>제29조제8항</u>을 위반하여 거 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②·③ (생 략)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 인묘지 · 사설화장시설 · 사설봉 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 · 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 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 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 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3. <u>제29조제6항제1호</u>
 4. <u>제29조제8항</u>
 5. <u>제29조제9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제29조제6항제2호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 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 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 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 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 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 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 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 략) <신 설>

-	
-	
-	
-	
-	
(2
-	<u>제29조제6항제2호</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	42조(과태료) ①
-	
-	1. ~ 12. (현행과 같음)
-	12의2.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하

- 12의2.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12의3.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
- 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 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 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 는 제외한다)
- 12의4. <u>제29조제6항</u>에 따른 장 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2의5. <u>제29조제7항</u>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12의6. <u>제29조제8항</u>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 한 자
- 12의7. (생략)
- 13. (생략)
- ② (생 략)

지 아니한 자
12의3. 제29조제6항제1호
12의4. 제29조제6항제2호
12의5. 제29조제7항
12의6. 제29조제8항
12의7. 제29조제9항
<u>12의8.</u> (현행 제12호의7과 같
<u>о</u>)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